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등(안 제5의2 신설)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하는 증빙자료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예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

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및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등(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

-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망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
- 2)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와 그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금융·신용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재입법예고(2023. 3. 30. ~ 4.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제5항 및 같은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탁(豫託)하여 교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하는 경우 금고에 개설한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에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예치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2. 법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4. 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사업의 실적 보고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집행·관리 등에 관한 업무로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단위별 정보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된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바목과 같은 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별표 2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이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5(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의 위탁) 법 제36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제16조의3 관련)

구분	요청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8조의2제1항 제4호가목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법 제28조의2제1항 제4호바목 관련	1.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자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자료
법 제28조의2제1항 제6호 관련	1.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4.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를」 제15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자료
12.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
16.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
19. 「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등기기록
2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
2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22.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
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
26.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27.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정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 제재 정보
3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
31.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 등록정보
3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33.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3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
3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3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37.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38.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40. 「농지법」 제54조의2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
4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제4항제4호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적기업 정보
42.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
43. 「여권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
44.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5.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6.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된 영수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7.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된 현금영수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8. 「전자정부법」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동법 시행령 제14조 2부터 제14조의5까지 보조금24에서 관리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49.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u> <u>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u> <u>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제5항 및 같은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위탁(豫託)하여 교부하는 경우</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하는 경우 금고에 개설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한다.</u> <u>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예치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u>

<신 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여신전문금융업」 제2조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 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

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2. 법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4. 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집행·관리 등에 관한 업무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사업의 유사·중복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단위별 정보에 관

<신 설>

<신 설>

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 관리망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된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바목과 같은 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별표 2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

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이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

<신 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보조사
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
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
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
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5(5년 초과 보유대상 자
료 또는 정보) 법 제28조의5제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
다.

1. 지방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신 설>

정보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
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
의 처분에 관한 자료 또는 정
보

4. 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
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
보조금의 교부제한에 관한 자
료 또는 정보

6.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
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
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22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업
무의 위탁) 법 제36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
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한
다.

제22조 (생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연 락 처	(044) 205 - 3735, 3738